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적용배제 옥외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포함〉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3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30.
3. 회부연월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철폐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로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이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①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은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¹⁾

반면,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은 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기 위하여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개정안은 반려동물²⁾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로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도 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찾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현행법은 ‘미아 찾기’와 같이 사람의 실종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인정하면서도 ‘반려동물 찾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등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하고 있어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한편,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실·유기동물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⁴⁾

3)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반려동물 실종 진단 부착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어 8,634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청원 접수 요건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음.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4)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상 규정은 유실동물이 발견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이므로,

유실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등록동물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분실 신고 게시물을 올릴 수 있을 뿐 전단지 배포 등 유실동물의 수색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⁵⁾

그런데 유실동물 구조단체에 따르면 반려동물 실종시 비교적 인근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제보를 통한 구조방식이 효과적이고, 실제 유실동물 구조 성공 사례의 80% 이상이 전단지를 통한 지역주민의 제보로 나타나는 등⁶⁾ 옥외광고물등이 유실동물 구조에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3만 건으로 이 중 67건만이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에 있으나,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구조되는 유실·유기동물은 약 10.7만 건⁷⁾이고 이 중 약 1.2만마리만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음을 고려할 때,

5)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6) 박채연 기자, “잃어버린 내 동생, 난이·백호…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내야 한다고요?”, 경향신문, 2026.02.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20600101>, 2026.04.22. 최종확인.

7) 개 77,304마리, 고양이 27,826마리, 기타 1694마리(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개정안과 같이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배제는 관례나 일상생활의 불편, 행정 효율성 저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용배제 대상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고,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형법」 및 「민법」 등 법령에서는 동물은 여전히 재물이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은 연간 약 10만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광고물 난립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대구광역시도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은 방치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며, 현재 반려동물 실종을 이유로 한 분양·훈련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